

“중대재해 처벌 못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될라”...우려 잇따라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08.23 11:41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 말고 책임을 부여하라”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공동기자회견을 23일 10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했다. 제공 제정운동본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을 두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조항들이 또다시 지적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공동기자회견을 23일 10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산재 재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시행령을 허투루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이다. 그간 사업주 책임을 묻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고 운을 뗐다.

여기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시스템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정부의 시행령 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우리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 제출 시행령이 재해예방인력을 안전보건인력으로 축소하고, 2인1조 과로사 방지, 하도급 비용과 공기 보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 정확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재해 핵심대책에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해서 시행령 적용 대상은 단 한건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발생 화학물질을 법에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에서 원료 제조물질을 특정하고, 소상공인 적용제외도 규정하여 적용 대상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며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시민이 추진했던 원안에서 한참을 후퇴했다”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종사자 전체에게 적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축소되었으며 의무 점검은 외주화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점검의무를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